

**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
전부개정령안 조문별 제·개정이유서**

1.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의 지정신청 등(안 제2조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법 제9조(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) 제2항에 따른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(이하 ‘지역산업진흥기관’이라 함)의 지정신청 및 처리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

나. 제·개정 내용

- 지역산업진흥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, 지정, 변경의 요건 및 절차, 서식 정비 등을 명시(제2조)
 - 지역산업진흥기관 지정신청을 위한 절차 및 구비 서류 명시(제1항)
 - 지역산업진흥기관 지정에 따른 행정조치(제2항), 지정사항의 변경 신고 절차(제3항)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법률 등의 위임사항을 명시하여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에 기여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입법례

문화예술교육 지원법	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
제10조(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등)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의 효율적인 실시 및 이에 필요한 참여주체 간의 협의·조정 그 밖의	제9조(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및 절차) ①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(이하 "지역센터"라 한다)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

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·도지사 또는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(이하 "지역센터"라 한다)를 지정할 수 있다.

⑦ 지역센터는 진흥원의 업무에 준하여 지역의 여건에 적합한 사업을 시행한다.

⑧ 진흥원 및 지역센터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인적·물적 자원의 교류 등 상호간의 협력망 구축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⑨ 지역센터의 지정요건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같다.

1. 최근 2년 이상 문화예술교육 실시 실적이 있을 것

2. 법 제10조제7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과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

3. 1명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사가 상근할 것

② 지역센터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지역센터의 운영계획서

2. 최근 2년간 문화예술교육 실시 실적을 기재한 서류

3. 자금의 현황과 확보 및 운용계획서

4. 상근 문화예술교육사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

5.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을 기재한 서류

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센터를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지역센터의 명칭

2. 지역센터의 대표자

3. 지역센터의 소재지

제10조(지역센터의 자료제출) 법 제11조제1

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지역센터는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의 사업추진실적, 예산 집행실적 및 다음 연도의 사업추진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2.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(안 제5조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 관련 변경신청 절차를 마련하고, 품질인증기관 지정과 관련한 확인서류를 간소화

나. 제·개정 내용

-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 지정 관련 확인서류에서 법인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삭제(제5조제3항)하고, 품질인증기관의 인증업무 변경을 위한 신청 절차 및 서식을 마련(제5조제4항)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품질인증기관의 인증업무 변경 관련 법적 절차를 명확히 하고, 신청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관련 규제 개선
 - 품질인증기관의 인증업무 분야를 확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인증 수요 분산과 인증 대기 기간 감축

3.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(안 제9조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법 제21조(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) 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 관련 제출서류 및 확인서류 간소화

나. 제·개정 내용

-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제출서류를 3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하고(제9조제1항),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 지정 관련 확인서류에서 법인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삭제(제9조제3항) 등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서류 간소화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 지정 관련 규제 개선

4. 프로세스 인증 신청 및 심사절차 등(안 제11조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법 제21조(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) 및 시행령안 제21조(프로세스 인증의 절차 등)에 따라 프로세스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절차와 서식 등을 규정

나. 제·개정 내용

-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을 유지·향상하기 위해 실시한 실적자료를 인증기관에 제출(제11조제4항), 인증기관은 3인 이상의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연장여부를 의결(제11조제5항)토록 하고,
- 프로세스 품질인증 신청과 심의,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고시로 위임함(제11조제7항)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간이한 심사를 통해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유효기간 연장 제도의 절차 규정을 신설하는 등 사업자 부담을 경감

5.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등 확인 절차 등(안 제13조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법 제24조(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)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확인제도의 신뢰성 향상과 증빙서류 간소화를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가능한 서류의 범위를 확대

나. 제·개정 내용

- 법 제24조(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)에 따라 경력등을 유지·확인하려는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 중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확대 명시함(제13조제5항)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확인제도의 신뢰성을 향상하고 소프트웨어기술자의 편의 제고

6. 하도급의 승인절차 등(안 제14조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법 제51조(하도급 제한 등)에 따라, 국가기관등의 장이 하도급(재하도급 포함) 계약 가능여부에 대한 신속한 승인과 적절한 하도급 관리·감독을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명시

나. 제·개정 내용

- ‘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’는 현행 ‘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지침(고시) 제4조에 따라 이미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(제14조제1항제3호)

- 하도급의 적정성 검토기간은 10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 연장하면서 통지예정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(제14조제2항)
- 국가기관등의 장은 하도급 계약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하도급 계약 준수실태 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(제14조제3항)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하도급 사전승인 처리시간 단축, 처리기간 예측가능성 제고 및 하도급 관리감독의 실효성 강화

7.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 절차 등(안 제17조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법 제58조(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)에 따른 소프트웨어 실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제출서류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

나. 제·개정 내용

-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관리제도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제출 서류를 명시(제17조제1항 및 제2항)하고,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규정(제17조제6항)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관리제도의 신뢰성 향상 및 사업자의 이용 편의 제고